

2020년도 3/4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

2020. 11. .

감사위원회

국민제안감사

감 사 보 고 서

- □□3구역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 관련 -

2020. 7.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A 등 619명)은 2020. 1. 15. 서울특별시 본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 □□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20. 5. 8. 2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중복 실시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IV.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참조)하였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재생자문 절차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가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 □□재생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한 것이 적정한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2020. 5. 27.부터 같은 해 6. 2.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8. 7.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1)

1.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 사업방식: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2. □□재정비촉진사업 주요 추진 경과

- 2006. 10. 26.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9. 3. 19. 촉진계획 결정
- 2014. 3. 27. 촉진계획 변경 결정(□□상가군 존치, 171개 구역 재개발)
- 2014. 6. 26. □□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자문단 구성·운영계획)
- 2015. 6. 19. □□3-4·5, 3-6, 3-7구역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15. 11. 13. □□상가 재생사업 운영체계 개선(안) 수립(자문단 통합운영 등)
- 2017. 2. 7. □□3-1, 3-4·5, 3-6, 3-7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접수
- 2018. 1. 29. □□3-1, 3-4·5, 3-6, 3-7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2018. 9. 4. □□재생자문단(도시재생분과) 운영 계획 변경
- 2018. 11. 7. □□3-1, 3-2, 3-3, 3-4·5, 3-6, 3-7, 3-8, 3-9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접수
- 2018. 11. 23. □□재정비촉진지구 3-1, 4·5, 6, 7구역 공사 착공 통보
- 2019. 1. 23. 서울특별시, □□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노포 보존 추진 발표
- 2019. 6. 12. □□3-1, 3-2, 3-3, 3-4·5, 3-6, 3-7, 3-8, 3-9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철회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생자문단 운영 부적정

- 서울특별시는 2014년 6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자에게 건축위원회 심의 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재생자문단에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
 - 그 결과 사업시행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때까지 짧게는 28일에서 길게는 106일까지 소요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침해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필수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2. 처분요구사항: 별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재생자문단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는 “□□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MP¹⁾ 및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²⁾과 “□□상가 재생사업 운영체계 개선(안)”³⁾ 등에 따라 □□재생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⁴⁾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이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하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018. 8.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 “2. 운영원칙”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시 과도한 서류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1)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 계획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함

2) 2014. 6. 26. 도시계획국장 결재

3) 2015. 11. 13. 행정2부시장 결재

4) □□재생자문단은 □□재정비축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자문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총괄계획가 1인, 4개 분과(도시재생분과, 프로그램분과, 주민협력분과, 전략홍보분과) 50인(민간 전문가)으로 구성하고 분과 자문은 수시로, 전체 자문은 필요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20년 5월 현재까지 도시재생분과(공공공간 설계·시공, 재정비축진계획 등)만 운영되었음

이행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운영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자문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위 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상가 재생사업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4. 6. 26. “□□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MP 및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등 내부방침을 정하고, □□상가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 시 관련 위원회 심의 전 □□재생자문단⁵⁾에 의무적으로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문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자문결과를 서울특별시 중구에 통보하여 행정절차 이행 시(사업시행인가 등)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재생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한 후에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재생자문단을 사실상 필수적인 심의기구로 운영하였다.

더욱이 □□재생자문단은 건축물의 배치나 평면계획, 외부공간과 입면계획, 주차장 계획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사실상 사업시행자는 이중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3-2구역의 경우 2019. 1. 11. □□재생자문단이 “주변 정비구역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

5) 2014. 6. 26. “□□상가군 활성화자문단”을 구성한 후 2015. 11. 13. “□□재생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가 2020년 5월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별표] “□□3구역 □□재생자문단 자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 명세”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생자문단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때까지 짧게는 28일에서 길게는 106일까지 소요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는 □□재생자문단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 2020. 3. 30. “□□재생자문단 운영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부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필수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3구역 □□재생자문단 자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 명세

(단위: 일)

구역	자문 신청일(A)	자문결과 통보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일(B)	지연일수(B-A)
3-4-5, 3-6, 3-7	'14. 11. 19.	'14. 12. 8.	'14. 12. 17.	28
	'14. 12. 8.	'14. 12. 16.		
3-1, 3-2	'15. 1. 20.	'15. 2. 11.	'15. 2. 25.	36
3-3	'15. 1. 20.	'15. 2. 11.	미신청	-
3-1(변경)	'16. 12. 27.	'17. 2. 6.	'17. 4. 12.	106
	'17. 2. 17.	'17. 3. 6.		
3-4-5(변경)	'17. 1. 6.	'17. 3. 6.	'17. 4. 10.주)	94
3-2(변경)	'18. 12. 24.	'19. 1. 11.	미신청	-
3-3	'18. 8. 9.	'18. 9. 18.	'18. 10. 12.	64
3-6(변경)	'18. 8. 9.	'18. 9. 18.	'18. 10. 12.	64
3-7(변경)	'18. 8. 9.	'18. 9. 18.	'18. 11. 6.	89
3-8	'18. 8. 9.	'18. 9. 18.	미신청	-
3-9	'18. 8. 9.	'18. 9. 18.	'18. 11. 5.	88
3-10	'18. 8. 9.	'18. 9. 18.	미신청	-

주: □□3-4-5구역의 경우 □□재생자문단에서 건축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완한 후 재자문을 거치고 나서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IV. 감사 미 실시 사유 명세

청구 요지	미 실시 사유
<p>[환경영향평가 중복 실시요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가 2015년 □□3-45, 3-6, 3-7구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도 - □□3-1구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서울특별시는 추가로 법적 근거도 없이 기 실시한 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 □□3-2, 3-3, 3-8, 3-9구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또다시 기존에 실시한 구역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 사업시행자에게 불필요한 용역비를 추가 지출하게 하고 사업 시행을 지연시켜 손해를 끼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협의 완료한 □□3-45, 3-6, 3-7구역의 사업과 이후 새로 추진한 □□3-1, 3-2, 3-3, 3-8, 3-9구역의 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추진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며 - 새로 추진한 구역의 사업 규모는 기존 구역의 사업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따라 재협의 대상임

특정사안감사

감 사 보 고 서

- 모범 · 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

2020. 8.

감 사 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2018년 7월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매년 자체감사기구로부터 모범사례를 추천 받아 오고 있다.

이번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은 위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편익 증진·행정능률 향상 및 국가사회의 이익 등에 기여한 모범사례와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모범사례 추천사항에 대하여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구별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공적행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특혜 소지는 없는지 등 공적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부지방국세청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20. 2. 3.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자료수집을 하면서 자체감사기구가 추천한 모범사례를 포함한 언론보도 사항 및 감사정보 등을 수집·분석

하여 예상 모범사례를 발굴하였고 같은 해 5. 11.부터 5. 22.까지 10일간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모범사례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8. 27.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7건의 모범사례가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통보(모범사례)
건수 (인원)	7 (3)	7 (3)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편익 증진 분야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은 지역주민의 반대 속에 설립한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에 기여
- ②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은 노년층 미디어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강사로 초빙하여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경제활성화 분야

- ① 서울특별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현장을 혁신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장소로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

(다) 성실근무 분야

- ① 중부지방국세청(체납추적과 A)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면서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해당 사례 및 조사방법을 전국 세무관서에 전파
- ② 평택시(환경지도과 B)는 평택항에 방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처리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항만 이용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평택항 조기 정상화에 기여

감사결과 확인된 모범사례 7건에 대하여 모범대상자(또는 부서, 기관)를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통보사항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추진으로 혁신기술의 상용화와 판로 개척에 기여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모 범 부 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혁신기술팀
모 범 내 용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혁신기술팀은 서울지역 소재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기술 상용화 지원 등 서울형 연구개발(이하 “R&D”라 한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통상 “기초연구-실험단계-시제품제작-상용화-사업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업들은 R&D 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그 성능을 시험적용할 장소나 납품실적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문제와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위 부서는 2018. 6. 28.부터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¹⁾ 제공 사업”을

1)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 편의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환경, 공간, 시스템, 설비 등을 의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정 가능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9. 6. 3.부터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현장을 혁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 관련 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위 부서는 4차 산업²⁾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직전이거나 갓 출시되어 판매 실적 또는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시장 납품실적이 필요한 기업 중 공공부문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2018년 7월부터 테스트베드 지원 신청을 접수하였다.

특히 2019년 6월부터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시적으로 테스트베드 지원 신청을 하고 상시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접주소 홈페이지³⁾를 개설하면서 접수 건수가 2019년에 크게 증가(2018년 58건, 2019년 224건, 2020년 4월 기준 61건)하였다.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실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보유 기술의 필요성·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실증기회를 확보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 부서는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여 서류검토 후 해당 혁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대신 수행하였으나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2)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집약형 산업

3) www.seoul-tech.com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기관에서 테스트베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시범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수요기관을 찾아 재협의⁴⁾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기관 외에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을 추가⁵⁾로 찾아 테스트베드 장소를 제공⁶⁾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이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서울특별시 전역의 보호수 69그루와 청계천의 이팝나무 30그루, 서울시립승화원의 조경수 25그루 등 총 144그루의 조경수에 물관흐름 및 토양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무선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진단한 후 관리자에게 병충해 발생 등의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도시나무 원격 건강검진” 실증을 실시하는 등 위 부서는 총 38개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실증기회 및 장소를 제공하였고, 그중 중소기업에는 5억 원 한도로 실증비용도 지원하였다.

한편, 테스트베드를 거쳤더라도 실제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등은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수요기관의 확인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위 부서는 실증을 거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기업 중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11개 기업에 과제명,

4) 위 부서는 “내외국환 잔돈 적립, 비대면 환전을 제공하는 공유플랫폼 기반 핀테크 기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관광재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의견조회하였으나 해당 기관들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자, 서울산업진흥원에 2차로 의견조회를 하였고 해당 기관에서도 불수용하자, 3차로 서울기술연구원에 의견조회를 하여 해당 기관에서 실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

5) 위 부서는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도시나무 원격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당초 요청한 조경과 외에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청계천, 서울시립승화원에서도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

6) 2018년, 2019년 사업 수행 시에는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위 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증 기회·장소를 제공하는 등 수요기관에서 수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었으나, 2020. 3. 4. 서울특별시 각 부서,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핵심기술 시범적용이 필요한 실증대상 및 적용기술을 수요조사한 결과 20개 부서 또는 출연기관에서 테스트베드 제공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위 부서는 2020. 6. 2.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수요 과제를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공급 중심에서 수요까지 반영한 실증체계 도입

실증기간, 실증기관을 명시한 실증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위 부서는 2019. 9. 5.부터 9. 6.까지 [사진]과 같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테스트베드 박람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에 서울특별시의 부서 및 산하기관 담당자와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기업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구매절차를 간소화⁷⁾하는 등 테스트베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에 대한 실증을 완료한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까지 지원하였다.

[사진] 테스트베드 박람회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주식회사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보호수 15그루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납품(계약금액: 약 5천만 원)하는 등 2018년에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하여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11개 기업⁸⁾ 중 8개 기업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자치구 및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39억 원⁹⁾ 상당의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고, 16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혁신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기여하였다.

7) 기존에 서울특별시는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추정가격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부서는 재무담당부서와 협의해 테스트베드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 규모 내인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9. 8. 1.부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8) 2019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2019년 사업에 참여한 27개 기업에 대한 사업화 성과는 사업이 종료된 2020. 11. 30. 이후에 집계할 예정임

9) 서울특별시 관내 자치구에 2,265,527천 원 상당, 국내외 기업 등에 1,634,457천 원 상당의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

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이 서울산업진흥원에 2018. 12. 1. 조명 및 블라인드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실증을 수행함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이 해당 장치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서울특별시 관내 48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4차 산업 관련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테스트베드 박람회 기간 중인 2019. 9. 6.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테스트베드 사업 운영 방식, 추진 절차, 애로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19. 9. 17. “대전혁신기술 테스트베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치 사 항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혁신기술팀은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